

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【계좌간자동이체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<신 설></p> <p><u>제9조(준용규정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관련예금약관, 상호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기로 합니다.</u></p>	<p><u>제9조(약관의 변경)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.</u></p> <p><u>제10조(준용규정) -----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관련예금약관, 상호저축은행 내규 등을 준용합니다.</u></p>